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검사 보관 기록에 대한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
원칙적 허가 등〉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35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 주요내용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4. 25.
3. 회 부 일: 2025.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한편,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기록으로 법원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기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해서는 열람·등사 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있음.

이에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에 대해서도 피해자등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

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물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제294조의5 (생 략)</u>	<u>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u>④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u>제294조의6 (현행 제294조의5와 같음)</u>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피해자 열람·등사제도

피해자 열람·등사제도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이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임.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94조의4에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에 보관중인 소송기록의 피해자등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25년 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9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임.

나. 피해자 열람·등사제도의 연혁

1)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며, 서울고등법원 1968. 5. 2. 선고 68구85 판결은 “형사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당해 형사사건의 기록열람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권을 부여한 근거를 현행법령상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지도 아니한다”고 판시

하여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부정한바 있음.

2)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강화하는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 중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를 신설하여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를 도입하였음.

3) 이후의 변화

2007년 이후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¹⁾하는 등(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이 확대되었음.

-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피해자등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물건에 대해서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 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물건 중에는 수사 및 공소유지예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공범 관련 정보, 참고인 진술, 수사기법 등이 노출되어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을 희석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 등의 열람 등사 신청의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

또한, 검사 보관 서류·물건에는 피의자·피고인뿐만 아니라 참고인, 증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²⁾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제294조의²³⁾에도 “피해자등”을 지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포섭범위와 다른 점, 개정안 제294조의5제2항 단서 중 “심리의 상황을 고려”에서의 ‘심리’는 법원의 심사를 의미⁴⁾하는 것으로 ‘재판’ 등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고단3344 판결 등

3)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다는 점,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 시점에 따라 이미 도과된 시행일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피해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3

4) 『법률』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